

농업기술평가 1년차



길

5

위기의 농어업을 살리기

제임스 기펜슈타인 인터뷰



차례

인사말 4p~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대표

윤항 충남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10p~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

농민기본소득 논의의 쟁점과 과제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박웅두 운영위원

토론 42p~

진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위원

이호중 (사)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오준호 용혜인 의원실 정책비서관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소병훈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유영훈 상임대표님과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님, 충남연구원윤황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빈곤이나 실업 같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회 공통의 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도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고 생명을 지켜 공동체의 생존을 떠받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간 농촌을 희생시킨 산업화와 시장 개방의 결과로 농민 대부분이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업과 농촌은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등 많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소득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지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과거의 농업직불금 제도는 대농에게 유리하고 소농에게겐 안정적인 소득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민 스스로 생존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나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농민수당 운동을 발전시키고 공익형직불제의 한계도 넘어서는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농민기본소득 운동이 농민의 행복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개최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용혜인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업은 노동의 불안정함이 일반인들보다 더욱 큰 산업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한 해의 결실인 수확물을 잃은 전국 과수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 예로 울산의 농가 786곳이 배를 재배하는데, 95%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그 낙과를 줌을 일손조차 없어 곤경에 처했다는 사연들에 전국 농업인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직불금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기능에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소멸하는 농촌, 이미 초고령화된 농민, 미래가 없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토론회에서는‘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와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해 깊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저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그리고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복지·경제정책이 될 것임을 자부하며, 더욱 정책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소병훈, 용혜인 의원님, 유영훈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장으로 함께해주신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촌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 대비 6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작황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져 우리 농가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농가는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에서 2019년에는 45.8%로 하락하여 식량의 절반도 자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직불제 등 기존에 지급되던 농가소득 보장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입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농민기본소득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아가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위기 등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중요하고 좋은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대표 유영훈입니다.

먼저 오늘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농민기본소득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해주신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하가 알다시피 오늘날 세상은 코로나 19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상황 속에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지구적으로 벌어졌던 기후변화는 그 위협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지구적 위기 속에 대자연과 협력으로 존재가 가능한 농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과 생태환경, 지역사회에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불어 건강한 삶을 위해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우주 삼라만상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찾아나서는 길이며 그 출발점의 한복판에는 바로 ‘농업’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밥 한 그릇이 만사지(萬事知)”라는 해월 최시형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한 그릇의 밥에 담긴 상생과 공존, 화해와 협동의 정신과 철학을 다시금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살림의 일꾼인 농민들이 민족의 어머니로서 생명의 밥상을 만들어주도록 ‘밥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사회적 각성과 함께 국가정책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오늘 토론회 주제인 ‘농민기본소득제’입니다. 그 구체적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 중이며 도시 소비자들과 시민사회, 농민단체들이 농민기본소득운동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미래에서 날아온 도자기 파편’이라는 말처럼 ‘기본소득’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오래 전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재난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시대’가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면화하기에는 아직 더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하고 국민 내부의 공감대도 더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먼저 ‘농민’부터 시행하자는 저희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토론회는 그러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서 매우 소중한 자리이며 ‘농민기본소득제’의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는 격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충남연구원

윤항 원장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봄에 시작된 냉해, 여름의 긴 장마와 홍수, 가을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농민들이 편한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방농정 이후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이 학계를 넘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실시됐던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먼저 농민, 청년,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먼저 지급하자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작년부터 아기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충남도의 모든 농가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했습니다. 전국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의 삶은 어렵습니다. 지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정부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용혜인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허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농촌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사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하나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
충남연구원

왜 농민기본소득정책인가?

본 글은 한국농촌사회학회 발간 『농촌연구』 2020년 제2호(10월 발간 예정)에 게재된 “포퓰리즘과 생존 사이: 지자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열풍’의 사회학적 해석과 기대”를 재정리한 것임.

1. 전국으로 확산되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2020년 9월 기준으로 도(道) 단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도만 제외하고 모든 광역지자체가 농민수당제 또는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19년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래 이처럼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농민수당은 지자체마다 명칭, 대상, 액수 등이 다르다. 지자체마다 각기 지역적 특성, 예산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전남도가 가장 앞서 ‘농어민 공익수당제’ 형태로 지난 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 5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농어업경영주) 24만3천여 명에게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충남도도 올해 6월 당초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반기에 45만 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도 농어민수당 80만 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이다. 전북도는 ‘농민공익수당’ 이름으로 올 하반기에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했다.

그 외 강원, 충북, 경남, 제주는 올해 농민수당(농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능하면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도내 6개 시군의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예정이었으나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정의 핵심정책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경기도 농민들에게도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경북도도 도 차원의 농민수당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인 봉화군, 청송군에서 지난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인근 영양군, 성주군 등도 농민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은 전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수당운동을 전한 한 기자는 현재의 농민수당운동을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평가했는데 다른 점은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농촌에는 혁명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표 1> 주요 광역자치단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현황

지자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0년 하반기 도내 참여 희망 6개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계획. 하지만 도의회 관련 조례 상정 보류로 지급 연기 *여주시는 2020년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 내년부터 2년 동안 도내 인구 3천 명가량의 1개 면 선정.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1년부터 농가(10만4천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예정. 양구군은 2020년 농민수당 35만 원 지급 예정
충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16만5천 가구)당 연간 80만 원 지급(상반기 45만 원, 하반기 35만 원)
충북도	농민수당	2020년 9월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조례만 제정하고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예정
경북도	-	내년 검토 예정, 봉화군은 2019년 50만 원, 2020년 70만 원 지급, 청송군은 2020년에 50만 원 지급, 그 외 영양군, 성주군도 농민수당 준비 중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24만3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강진군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이름으로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 지급. 해남군은 2019년에 농민수당 이름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2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제주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 1월에 농가(5만5천 가구)에게 지급. 액수 미정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미정)	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보류

자료: 한겨레 2020년 8월 21일자 보도내용 등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확산의 이유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불과 1~2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마치 마른 쉼에 불이 붙듯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지금도 그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번져가고 있다.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농민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즉, 농정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농민의 생존 위협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는 것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농민의 생존 위협 또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농민들은 더 이

상 농정을 믿지 않으며 물러설 자리도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본격적인 시장개방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있는 농업을 주창했다. 그래서 현대화된 시설, 규모화된 농지, 소수 농업인에 집중된 농업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기존 농업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부딪히자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 대안이라며 관련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농가소득이 한계에 부딪히자 이제 농촌으로 눈을 돌려 농촌마을 개발, 농촌체험과 관광, 경관농업 등을 실시하며 각종 이름의 마을을 만들어냈다. 그래도 농촌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는 이것저것 모아서 농업6차산업이 답이라며 농촌에 농업6차산업 ‘광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한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 이기에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농촌에서 농업6차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하는 것이다. 더욱이 농사만 짓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핵심은 이러한 사업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 농정은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정책을 참으로 열심히 해왔다. 부분이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다. 농민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책은 정작 회피한 채 이러한 정책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다고 호도해 왔다. 충남도 농가의 농업소득 가운데 중위소득을 보면, 2003년도에 약 680만 원이었으나 15년이 지난 2018년에는 약 660만 원으로 15년 동안 오히려 20만 원이 줄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그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대다수의 농가의 농업소득은 오히려 하락했다면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정부의 농정을 믿지 않는다. 아니 냉소하고 있다. ‘차라리 그 돈을 1/n로 나눠주라’고 농민들의 푸념은 푸념이 아니라 당위이다.

둘째, 농민들도 불공정과 불평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농정에 불공정과 불평등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많은 농정예산은 누가 다 가져가는가.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농업의 영역도 넓고 관련 사업도 복잡하기 때문에 농정예산이 어디로 다 흘러들어가는 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농민들은 느낌으로 안다. 굳이 통계수치를 보이지 않아도 농촌에서 실행되는 사업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농정을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농정의 핵심은 농업직불제이다. 현재의 직불제는 크게 세 가지 불평등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농가 간 불평등이다.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직불금을 많이 주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심각한 자기모순의 함정도 있다. 즉, 농사를 적게 짓는 농민들은 농촌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상위 10%의 농가가 직불금의 약 50%를 가져가는 체계에서 소농들이 설 자리는 없다. 둘째는 작목 간 불평등이다. 이제까지 직불제는 밭농업보다 논농업에 훨씬 유리하게 작

용해 왔다. 쌀은 우리의 주작목이고 식량안보의 핵심 작목이기에 우리가 지켜야할 핵심작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밭농업 또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밭농업은 논농업보다 일의 양이나 강도 면에서 훨씬 힘이 든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쌀 위주의 직불금으로 한정하다보니 쌀만 자급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고사되었다. 셋째는 지역 간 불평등이다. 벼재배가 많고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직불금이 많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적다보니 (준)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의 농업은 자연스럽게 고사되고 있다. 직불금이 지역 간 균형과 형평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한 것이다. 이러한 농정의 불평등과 불균형 때문에 모든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요구되고 있다.

혹자는 유럽에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을 주장하느냐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유럽은 평균 경지 면적이 40~70ha이고 미국은 몇 백ha이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직불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경작면적이 1.5ha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직불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직불, 즉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은 농정예산의 70~80%을 직불제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20%도 채 안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직불제 규모로는 농민이 농촌에서 살아가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평등에 더 분노한다(不患貧 患不均)'고 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농정에 대한 농민의 심정이 그러할 것이다.

셋째,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부여받는다든 천부인권설은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바탕이다. 굳이 세계인권선언이 아니라도 각종 유엔의 권리선언과 국내 헌법 등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민은 특히 그렇다. 역사 이래도 농민은 늘 약자였고 피지배계층이었고 수탈의 대상이었다. 세월이 바뀌고 민주정부가 들어와도 바뀐 건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했고, 현 정부도 농정에 대해 관심은 별로 없다. 올해만 하더라도 봄철 냉해, 여름의 홍수와 태풍,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닥쳐도 농민에 대해서는 유독 야박한 게 지금의 정부이다. 농정예산은 변한 게 별로 없고 그 요란한 뉴딜정책에도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농민도 사람이다'는 외침은 민주정부에서 더 외면당하고 있다. 촛불혁명정부,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전 세계 억압받는 소농의 권리 지키자는 유엔의 '농민권리선언'도 이 정부는 기권으로 화답했다. 이제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지키는 방법 외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나오게 되었다.

넷째,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인구소멸이다.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

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맞는 말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농업은 식량안보, 국토환경, 자연경관, 수자원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여러 공익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제를 도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많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농민수당제를 안 받아주면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런데 돌연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몰라서 농민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닌데 말이다. 지자체가 나서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지자체의 인구감소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고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지자체이다. OECD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보면 영국이 12.5%, 프랑스 18.8%, 일본 30.0%에 달한다.(농촌여성신문, 2020.8.21).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0%를 넘어섰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인구감소를 대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앙공무원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구감소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다르다. 인구감소가 자신의 앞날과 직결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지자체에 인구가 감소되면 바로 지자체 교부금이 감소된다. 둘째,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직제도 축소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 인구가 줄어들면, 2개 있던 국장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 수 있고, 5개 있던 과장 자리가 4개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줄어들 게 된다. 만약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자신의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통폐합이 된다면 자신의 앞날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자체가 이웃의 큰 지체와 통합이 된다면 자신은 그러한 행정체계에서 ‘비주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개편은 인구감소가 크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공포인 셈이다. 넷째, 행정·복지서비스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이 군단위 행정체계였다가 인구가 줄어 출장소 혹은 읍단위 행정체계로 바뀐다면 군단위 지자체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복지서비스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인구감소가 공포일 수밖에 없고 이를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이유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공포’는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 주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지역이 축소되거나 개편된다면 행정적·복지적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 자신의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감소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2020년 8

월 기준 경북 영양군 인구는 16,680명이다. 지난해 말 17,300명 수준이었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영양군이 존속될 수 있을까? 현재 행정개편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올 1월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으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체계적으로 선진국이라 여겼던 나라들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의료시스템 자체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공포는 경제적 패닉(panic)이었다. 사람의 이동이 막히고, 집합이 금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등장한 것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긴급한 재난의 상황이기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일률적인 지원금, 즉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일순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이후 중앙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선택이 아닌 보편적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즉 재난기본소득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지원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긴급한 위기의 시기, 즉 재난과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가 큰 경제정책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는 1990년대 개방농정 이후 위기의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고, 재난의 시기가 아닌 적도 없었다. 습관처럼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 농민이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도 정책은 ‘선별’하고 ‘집중’하는 데 몰입을 했다. 역량있는 농업인, 농기업, 단체, 마을, 지역에 예산을 집중해 그 효과가 동심원처럼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농업 정책이 결국 농촌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농촌에서 사람을 몰아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농민의 기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각종 사업들이 횡횡했다. 그 예산 다 모아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주장은 헛구호만은 아닌 이유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식량안보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만약 수입이 끊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도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뉴딜사업에 식량안보를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멀쩡한 농경지에 농사수익보다는 태양광수입이 많으니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사업이 그린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쓴 적이 있다. 농민이 공직자라면 최소한 그만한 예우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야 살아갈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와 같은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전혀 다른 방식의 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농민수당을 받아든 농민이 ‘생전 처음으로 농민이 대접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어떤 농민은 ‘농민수당을 받고 눈물이 핑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감동의 정치, 감동의 정책을 현 정부에서 만들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3.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의 개념 및 쟁점

현재 농업계에서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이 논의 또는 실행되고 있다. 이 세 정책은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각각의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개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올바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개념의 규정이 우선 필요하다.

먼저, ‘농민수당’의 개념과 쟁점이다. 원래 ‘수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본업, 즉 기본적인 일 외에 추가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가리킬 것이다.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많은 농민수당 조례에서 적시했듯이 농민수당의 가장 큰 근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러한 가치는 시장가치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농민들의 주장이라면 농민들 중에도 공익적 가치를 많이 창출한 농가에는 많은 보상을 해야 하고 적게 생산하는 농가에는 적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농민수당은 지역 편차는 있지만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는 농민 개인별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은 이름은 농민수당이고 내용은 농민기본소득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쟁점이다. 본래 기본소득은 보편성(universal), 개별성(individual), 무조건성(unconditional), 정기성(periodic), 현금성(cash payment)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필수 요건이라고 하고 무조건성, 정기성은 선택 요건이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의 정확한 용어는 농업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학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특정한 계층이나 연령에 주는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는다면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부분적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 지급이고 지급조건이 있으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농민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한정된 농민이 아니라 모든 농민에게, 지급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이 없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런 형태의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없다.²⁾

셋째, ‘공익직불’의 개념과 쟁점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공익직불제는 기존 면적 중심의 직불에서 소농을 보호하는 직불이라는 점에서 직불제 나아가 농정의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농민수당에서 설명했듯이 ‘공익’ 차원에서 본다면 왜 0.5ha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논리가 빈약하다. ‘공익직불’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많이 생산하면 많이 주고 적게 생산하면 적게 주어야 하는데 0.5ha 미만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공익직불은 최근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해 인적(人的) 직불을 포함한 직불제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 제도에 여러 상충되는 목적이 있다 보니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 공익직불은 기본직불(0.5ha 미만 농가에 대한 120만 원의 일률 지급)+가산직불(면적에 따른 점증적 지급)을 말한다. 아직 가산직불 가운데 친환경농업직불이나 경관직불에 대한 명확한 지불방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공익직불은 하나의 제도에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직불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공익직불 가운데 기본직불은 상당 부분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개념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에게 매달 1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비용의 50~9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한 무소속(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각각 농가에 연간 최소 120만 원 이상, 중앙정부 부담 40~90%인 농업인 기초연금을,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중앙정부가 매달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외 정의당, 진보당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서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어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법이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이 가운데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기존 공익직불제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시대전환(정당명)의 조정훈 의원이 전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골자로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전국민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전국민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간에 관계설정, 예를 들어 금액 설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 내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2) 그럼에도 농민기본소득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배경과 취지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나온 배경이 그렇듯이 농정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배경과 취지가 있다. 농가 간 불평등, 일자리 문제, 사업 방식,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사람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이러한 취지에서 농민단체와 제 정당 간 농민기본소득의 방향 설정과 법안 마련을 위한 교섭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표 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활동 현황

주체(소속)	법안 내용	중앙정부 재정 부담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대표 발의 - 농어업인에게 매달 10만 원지급	50~90%
박덕흠 (무소속, 전 국민의힘)	- 농가에 연간 최소 120만 원 지급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대 표 발의	40~90%
이만희 (국민의힘)	- 농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농어업인에게 매달 10 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대표 발의	100%
농민기본소득전국 운동본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 접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고령으로 경영이양을 하 고 마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민,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업종사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법안 추진 중	100%
농민의길/진보당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농 민수당제 입법 추진(추가 확인 필요)	100% (확인 필요)

4.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역사적 관점

기본소득에 관한 이론가는 많지만 오늘날 기본소득의 틀을 만든 사람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이다. 그는 1737년 영국 잉글랜드 퀘이커교도 가정에서 출생해 13세까지 수학 후 가난으로 코르셋상점 점원 등 여러 직업 전전하며 정치와 사회제도 모순 체득했다. 17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상식_Common Sense>을 출판해 미국 독립의 당위성 주장했고 실제로 독립전쟁에도 참여했다. 이후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대혁명에도 참여했던 그는 1771년에는 <인권_Rights of Men>을 출판해 영국 군주정의 모순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마지막으로 1779년 기본소득의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 <토지분배의 정의_Agrarian Justice>를 출간했다. 약 20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논문 형식의 이 책에서 그는 그의 사상적 여정의 마무리하는 글을 남긴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권의 기원은 자연권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더욱이 땅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류가 '문명화'되고 법과 제도가 발달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진 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그렇지 않는 자의 권리는 약화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진 자들의 부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재산들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강화해 시민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시민들에게 배당하자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상속은 자신이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강한 세금을 부여해 이를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일 년에 533만 파운드를 모아 노인 40만 명에게 매년 1인당 10파운드를 지급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21세 청년 9만 명에게는 1인당 15파운드를 지급하자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 등 비노인에게 지급하자고 했다. 토마스 페인의 시민배당은 오늘날 노인수당,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장애인수당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마스 페인은 이러한 시민기금은 정부의 자선이 아니라 의무이며 시민들은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토지단일세의 기초가 되었고 유럽 복지체계의 토대가 되었다.

<표 2> 토마스 페인의 시민배당 방법

연간 기금		566만 파운드
노인 40만 명에게 매년 1인당 10파운드씩 지급	400만 파운드	
21세 9만 명에게 1인당 15파운드씩 지급	135만 파운드	
		535만 파운드
잔액(비노인, 장애인)		31만 파운드

주: 토마스 페인(남경태 옮김). 2012. <상식>, p.114 참고

기본소득의 시작은 서양이고 이론가와 사상가들 대부분이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사상적 기초를 찾지만 기본소득이 서양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동양에서도 용어만 달랐지 기본소득의 기초가 되는 사상적 토대가 있어왔다. 기본소득 사상의 동양적 토대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모든 이의 것’, 천하위공은 중국 고서 《예기》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진리가 행해지면 세상은 모든 이의 것이 되며 이를 ‘대동(大同)’³⁾이라고 말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천하위공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생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 공유 사상을 지향해 왔다. 역대 개혁적인 왕조에서는 균전제, 여전제, 정전제 등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

3) 경기도가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처음 개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천하위공’,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사상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공유부(共有富), 혹은 공통부(共通富)를 말하는데 이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 혹은 데이터처럼 인류가 새롭게 만드는 공통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 인류 모두가 일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류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의 취지이기도 하다. 토마스 페인의 자연권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의 불평등한 소유구조가 심화되었을 때 사회가 가장 불안하고 분란이 많았다. 반면, 토지분배가 가장 잘 이뤄졌을 때 사회가 화평하고 안정적이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도 토지(부동산) 불평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은 이를 잘 대변한다. 마오쩌둥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들어가 당시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농민의 토지 문제를 파고들어 토지의 균등한 배분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농지개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런데 토지가 생존의 절대적인 필수요건인 시대를 지나고 그 자리를 소득이 차지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득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분배 대신 소득을 분배해 인간 삶의 기본 토대를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21세기 자본>에서 지난 100여 년간의 소득 자료를 통해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적,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합의된다면 얼마든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넘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제를 도입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률적으로 1~2억 원의 자산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0년 전의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청년배당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정책, 특히 직불제는 불평등의 문제, 농촌공동체의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면적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농정이 전환되어야 한다.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수록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지 오래되었다. 농지의 보전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농지의 소유주와 경작자를 분명히 해야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 뭐하다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실시한다고 하니 농민(농업인)의 개념이 중요하니, 농지소유권과 경작자 파악이 중요하니 하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 이를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함은 있지만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농민(농업인)의 개념과 농지소유권과 경작자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농정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5.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넘어 농촌기본소득으로

2015년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연구할 때 연구 제목을 농민기본소득으로 할지 농촌기본소득을 할지 고민을 하다 결국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정했다. 당장은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농촌에 농민의 인구는 1/4에 불과하다. 농민기본소득/

4) 물론 필자는 미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토지개혁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농민수당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농촌에서 농사는 짓고 있지만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농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농업인)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품을 팔거나 집을 짓거나 기계를 고치거나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은퇴하고 소일거리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 유엔에서는 농민의 개념을 넓혀 농지가 없어도 농촌에 살면서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대상에 포함했다.⁵⁾ 이러한 유엔의 근거를 토대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범위를 넓혀 농촌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농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다. 지금과 같이 도농 불균형이 심하고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농정을 계속한다면 농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회피를 넘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농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정예산의 대부분을 농민들에게 직접 준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농정은 농민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각종 사업으로 농민을 줄 세우고, 지자체를 줄 세우고 자신의 하부 조직들을 관리하며 관료의 위세를 부리는 그런 일제 잔재의 농정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농민에게 나아가 농촌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농업, 그들이 만들고 싶은 농촌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행히 최근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경기도의 1개 면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농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질 것이고 농촌에 인구이동, 소득증대,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심리적 만족감 증진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본소득은 보수 야당에서도 정강정책 1순위로 책정할 만큼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넘어 기초자산, 생애주기자본금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법이 발의가 되었다. 전국민 기본소득도 도입

5) 지난 201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농민권리선언>, 정확히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제1조에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선언문에서 농민은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또는 공동체로서, 생계 및/혹은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가족이나 가사노동 혹은 화폐가치화 되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하며, 토지에 특별한 의존성과 애착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선언문은 재래식 혹은 소규모 농업, 농경, 목축, 유목, 어로, 영림, 수렵 또는 채집, 그리고 농업과 연관된 수공예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유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3. 본 선언문은 토지에서 일하는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이동 방목, 유목 또는 반유목 공동체, 그리고 위의 활동을 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4. 본 선언문은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플랜테이션, 농장, 산림, 수산양식장, 농업업체의 농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출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 되어야겠지만 그동안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 농촌, 농업이 받아온 불평등과 불공정을 생각하면 농민기본소득 나아가 농촌기본소득이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지금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6. 맺으며: 생존을 향한 포퓰리즘은 필요하다

최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 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한 지자체 단체장을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지난 긴급재난지원금(긴급재난기본소득) 이전부터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감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비롯 많은 재난지원금(생활안정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 데에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역화폐를 통해 농촌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실 알고보면 포퓰리즘이 꼭 나쁜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적시적소에 실행하는 정책이야말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교롭게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과 포플레이션(population: 인구)은 어원이 ‘사람(people)’으로 같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정치가 사람들에게 인기(popular)도 있다. 인구감소로 농촌공동체는 붕괴되고 시장개방과 기후위기로 농민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소득만으로 버티기 힘들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이라면 그 길을 따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경철. 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충남연구원. 2019.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 충남도의회.
- 충남연구원. 2020.9.18.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본소득정책 방향 토론회(부제: 충남도 기본소득정책 현황과 과제)」 자료집.
- 토마스 페인(남경태 옮김). 2012. 『상식』. 효형출판.
- 토마 피케티(장경덕 외 옮김). 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주제별표들

박용두 운영위원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쟁점과 과제

농민기본소득 논의의

I. 농업의 현실과 소득지원제도의 필요성

1. 농업여건 변화와 소득지원의 필요성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농가교역 조건 악화로 농업수익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독재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저곡가 정책과 급격한 수입개방에 의해 내제적 발전의 기회를 봉쇄당하고 시장기능의 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전사업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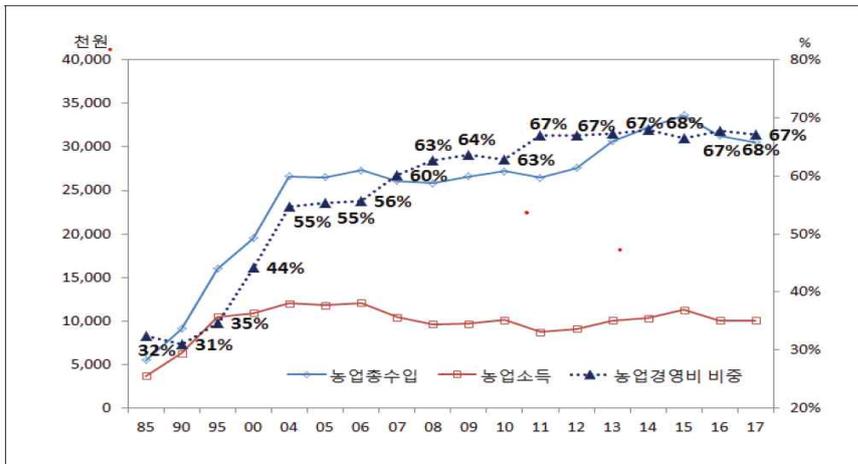
그 대표적인 것이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소득손실보전과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한 각종 직불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농가 교역조건 악화와 농업소득 정체

농가판매가격지수(2005년=100)와 농가구입가격지수(2005년=100)의 비율을 나타내는 농가교역 조건지수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100 미만 값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 연도인 2005년 이후 농가구입가격의 상승이 판매가격의 상승보다 항상 더 높았기 때문이다.

농가교역조건 악화는 농업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농업총수입 정체 및 농업소득 정체 혹은 하락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농민층 내부의 양극화를 절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표1) 농업총수입- 농업소득- 농업경영비 변화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 생계급여 이하의 높은 고령층 비중

2017년 농가소득 중앙값은 2,836만 원(2인가구)으로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금액 기준) 1,013만 원(2인가구)보다 1,823만 원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농가 중 생계급여 보다 소득이 낮은 농가의 비중은 3.9%로 이르고 있다.

이중 생계급여 보다 낮은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화와 농가경영주의 인구 비중 차이로 인하여 70대 이상 농가가 전체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고령농의 빈곤을 확대는 새로운 소득 보전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고령농가의 논벼 집중도가 높아지고(2015년 기준 59.4%) 이는 농가소득지원제도의 상당부분이 쌀농업에 집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2) 농가 특성별 생계급여 이하 농가 분포(2017년)

단위: %

구 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영농형태	논벼	1.2	4.9	3.3	11.5	21.0
	축산	0.0	0.4	1.7	3.0	5.1
	과수	1.0	2.1	9.2	9.8	22.0
	채소	2.2	4.9	9.2	14.7	31.1
	일반밭	1.1	0.3	0.1	2.6	4.2
	기타	2.9	1.9	6.6	5.4	16.7
표준영농 규모	0.1~0.5	0.0	3.1	2.2	5.7	10.9
	0.5~1.0	3.0	1.0	5.8	16.1	25.9
	1.0~3.0	4.8	5.1	19.0	21.0	49.9
	3.0~5.0	0.6	1.6	2.5	3.3	7.9
	5.0 이상	0.0	3.8	0.7	1.0	5.4
전체		8.4	14.6	30.2	47.1	100.0

자료: 통계청(2019a),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 지역소멸의 위기와

2. 농가소득에서 정부지원금의 비중

농가소득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2.3%에서 2017년 25.4%로 13.1%p 늘었다. 농가소득에서 기타공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17.1%까지 높아진 반면, 농업 관련 보조금(농업피해보상금 및 농업보조금)은 2008년 5.1%에서 등락 현상을 보이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 기준 8.2%로 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등 기타공적보조금 의존비중은 2008년 7.2%에서 2017년 17.1%로 10%p 늘어났으나 농업 관련 보조금은 같은 기간에 3.1%p 늘어나는 데 그쳐 주로 복지성격의 지원금 상승으로 정부지원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단 농가소득에서 정부지원금 의존 비중이 상승한 것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등 기타공적보조금의 인상과 2017년의 경우 2016년산 쌀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원으로 논벼에 대한 농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표3)농가소득에서 정부지원금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2008년		2017년		차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p
농가소득	30,521	100.0	38,239	100.0	7,718	-
농업관련보조금(A)	1,568	5.1	3,143	8.2	1,575	3.1
농업피해보상금	520	1.7	1,460	3.8	940	2.1
농업보조금	1,048	3.4	1,682	4.4	634	1.0
기타공적보조금(B)	2,194	7.2	6,554	17.1	4,360	9.9
계(A+B)	3,762	12.3	9,697	25.3	5,935	13.0

자료: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 결과.

II.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

1. 공익형직불제의 주요내용 및 개선과제

1) 공익형직불제의 도입배경

표4) 공익형직불제 개편 목적과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구분	내용
개편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단가 적용 □ 쌀 편중, 쌀 생산연계 문제 해소를 위해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단가 차등화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수준의 의무 추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면적 감소로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밭작물 재배여건 개선 및 재배 확대로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 •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작물 재배 농업인간 형평성 제고(현재: 논고정 100만원/ha, 밭고정 55만원/ha) • 일정규모 이하 농업인에 대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여 영세소농의 소득안정 도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공익형직불제의 주요내용

-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본직불제도(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총 17개의 분야별 활동의무가 주어짐

표5)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다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 원/ha)

단계	구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②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③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2)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

- 면적 중심의 기존 체계를 답습,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개편원칙이 유지되지 못하고 하후상동(下厚上同)으로 사실상 후퇴하였다.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들은 신청·수령을 할 수 없음.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하고 있다.
- 선택형직불금(경관보전, 친환경)비중이 낮아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친환경직불금은 2015년 508억(3.2%), 2016년 437억(2.1%), 2017년 411억(1.4%), 2018년 435억(1.8%).이었으며 경관보전 직불금도 2015년 139억원(0.9%)에서 2016년 136억원(0.6%), 2017년 116억원(0.4%), 2018년 93억원(0.4%)으로 축소돼 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공익적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었으나 가격 급락 때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완충 장치가 필요하지만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 예산확보대책이 없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테스크포스(TF)가 관련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2년까지 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발표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는 직불금이 동결되었었다.

2. 농어민수당 추진현황과 입법과정

1)농어민수당 도입 의미

- 농어민수당 도입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처음으로 제도화 했다는데 있다. 특히 2018년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자는 농민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직접정치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의 다양한 경제사회활동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사회유지,전통문화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어업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 두 번째 의미는 기존 정부정책이 규모화, 상업화를 촉진하고 정부주도의 설계농정에 의해 운영되고 면적중심의 직불제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면 농어민수당은 면적이 아닌 농어민을 직접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민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도화 했다는데 있다. 이는 농어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입안자로서 스스로 농어업 정책수립의 중심으로 등장했다는 정치선언이다.
- 농어민수당이 사람중심의 농어정 변화 뿐 아니라 규모화,전업화로 인한 농어민층 내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켜 내고 장기적으로 중소농의 존립을 유지시켜 지속가능

한 농어업농어촌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계기가 될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2019년 해남군의 농어민수당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 7천461명 (58%), 영농규모 1ha 미만이 6천910명 54%(전업 축산농 87명)를 차지해 기존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농과 소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 농민수당은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울력 등을 통해 농촌을 관리하는 농민들의 권리이다.(녀름. 이수미연구원)

표6) 농어민수당 도입 논의 배경

구분	기존	여건변화	변경
목적	피해보전 목적 (수매제 폐지, 수입 개방 피해)	피해보전 방식으로부터 농업 공익적 역할 인정 요구 방향으로 전환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소득보상 목적
지급기준	경지면적 비례지급	기본소득제 논의와 함께 인적 지원방식 필요성 제기	농가(경영체) 혹은 농업인 기준 일정 금액 지원 방식
농업정책 추진방식	세부 사업별 매뉴얼 방식	불요불급한 지원사업 조정 → 농가에 직접 소득 지원 필요성 제기	개별사업 지원 → 직접 소득 지원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0

2) 농어민수당 도입현황

표7) 지자체별 농어민 수당 도입현황(2020.9)

지자체	조례명칭	지급액	지급시기	비고
전남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	연 60만원	2020년	
충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연 80만원	2020년	
전북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에 관한 조례	연 60만원	2020년	
강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연 80만원	2021년	
충북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연 50만원	2022년	
경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	연 60만원	조례통과 즉시	여주시

	조례안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연 120만원	2022년	농민 개인 지급
경남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2022년	의령군 , 합천군,하동군
경북				논의 중 봉화군, 청송군

3) 농민수당 입법현황

표8) 농어민수당 관련 발의된 법률안 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10.1.)

발의 의원	법안명칭	주요내용
정의당 강은미	농어민수당 지원법	- 지자체 비용의 40~90%를 국가에서 지원 (10만원 기준)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종사자 포 함.
민주당 윤준병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경영주와 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 종 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종사자로 함 - 월10만원. -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국가가 부담
국민의힘 이만희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 발위원회는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기초연금은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 상을 지급하도록 함
국민의힘 박덕흠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농업경영체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 함(안 제6조). -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 위에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
무소속 김태호	농어업인 삶의 질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p style="text-align: center;">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	<p>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하 이 조에서 “농민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

Ⅲ. 농민기본소득 논의의 주요쟁점

1. 농민(수급권자)의 규정은?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주농업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농업노동을 하는 지역민, 장기간 농업을 생업으로 이어오다 은퇴한 고령농업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정의) 2.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UN 농민·농촌 노동자권리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을 포괄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농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① 농민기본소득은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업종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주된 소득인 농민으로 한다.
 - 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접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고령으로 경영이양을 하고 마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

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업종사자
 4. 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 중인 이주노동자.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
 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소득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기간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왜 30만원인가?

- 농민기본소득 지급금액이 얼마가 적절한지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무
 엇보다도 사회적 수용성 및 재정운용 계획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농민기본소득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모
 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사회적기본권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9) 2019 도시-농가 평균소득 추이

구분	도시노동자 평균소득(A)	농가 평균소득(B)	소득격차(A/B)
금액	3,300만원	1,869만원	1,431만원(57%)

출처:통계청

- 농민 개개인에게 매월 30만원을 농가당 2명에게 지급 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의
 1/2를 보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격차를 완화시켜 나갈수 있
 을 것이다.

3. 재원확보 방안은?

-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442,966명(2018년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8조9,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전체예산 중 농식품
 부 예산이 15조 8천억원(3.08%)에 이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만
 가능할 수 있다.
- 그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매년 국가예산증가율에 비해 인상률이 저조했고 농민단체
 의 요구나 각 정당의 선거공약을 기초로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을 정률로 5% 정
 도를 유지하게 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불요불급한 농업예산을 재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농업소득세 등 일정한 과세를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표10)최근 10년간 농림수산물 예산 비중변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 전체(A)	3,091,000	3,254,000	3,420,000	3,558,000	3,754,000	3,864,000	4,005,000	4,288,000	4,696,000	5,123,000
농림수산물예산(B)	176,354	181,322	183,862	187,334	193,065	193,946	196,221	197,256	200,303	215,148
비중(B/A)	5.7	5.6	5.4	5.3	5.1	5.0	4.9	4.6	4.3	4.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C)	131,929	136,778	135,268	136,371	140,431	143,681	144,887	144,996	146,596	157,743
비중(C/A)	4.3	4.2	4.0	3.8	3.7	3.7	3.6	3.4	3.1	3.1



4. 농촌기본소득과의 관계?

- 일각에서 농민기본소득 보다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온 주체로 농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기준이 매우 넓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실제 도농 통합지역(광역시)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각종 농업관련 지원에서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 농촌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시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 현 단계에서는 계층별 범주형 기본소득(청년,아동,노인등)을 거쳐 전국민기본소득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5. 농어민수당/공익형직불제와 연계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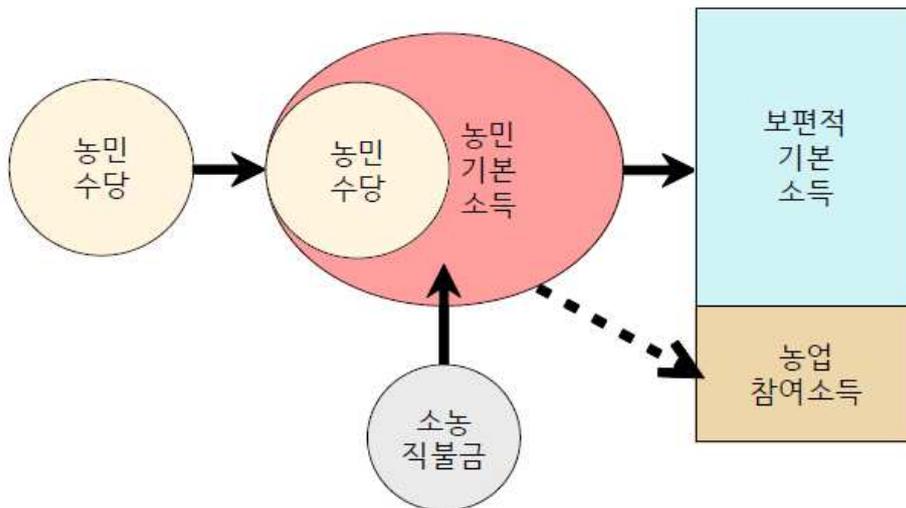
- 농어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배경에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영비상승과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이미 시행되어온 소득지원 및 경영비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며 지방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입되고 있다.
- 공익형직불제와 농어민수당은 공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헌법적권리를 옹호 실현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익형직불과 농민기본소득은 국가 사무로써 각자의 특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바 상호 보완하며 발전시켜나가고 일정 시점에서 단일한 소득안정망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농어민수당이나 공익형직불제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이 갖는 차별성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려는 목표와 동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농민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농민에게만 국한된다면 사회적 반발로 인해 일정 액수 이상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고 농민기본소득은 전국민기본소득의 실현을 앞당기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현 단계에서 농어민수당은 표14)처럼 공익형직불제의 확대와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발전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향후 농민기본소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농어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농가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을 재구성하여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독자적인 지역농정발전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12) 공익직불제와 농어민수당의 차이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추진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적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개념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 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창 출하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 상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 기본형공익직불	- 농업농촌 유지발전 - 지역경제 활성화
구성	(소규모농가/면적으로 구분) - 선택형공익직불	단일
대상	일정규모 농지 등	- 지역에 거주 - 농업에 종사
기준	농지(면적)	지역 농민
준수의무	17가지	지역마다 차이 (유/무)
지원	- 소농직불 120만원 - 면적직불 면적별 차등단가	±60만원
방법	계좌입금	지역화폐(해당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

출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 326호 이슈보고서

표14) 농민수당, 소농직불금 → 농민기본소득 → 보편적기본소득 + 농업참여소
득 발전의 흐름



출처: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소농직불제의 발전경로.
귀농운동본부 토론회 자료집.2020.10.24 김찬휘.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0
- 이수미. 202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1) -농민수당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중심으로」.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304호 이슈보고서.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 326호 이슈보고서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2020. 『농민기본소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 유찬희·김태영. 2020.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민기본소득운동의 현황과 입법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사)전국귀농운동본부,2020.10.24

미래 하나

진주 상임연구위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공익’과 ‘소득’을 중심으로-

1. 전환시대에 농민과 먹거리

- 지금 농민은 ‘어떤 농민’이 되고 싶어하며, 시민들은 ‘어떤 먹거리’를 먹고 싶어하는가
-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농민’을 만들어야 하며, 시민들은 ‘어떤 먹거리’를 먹고 살아야 하는가

○ 다수의 소규모 농부들: 농지가 더 있어서 좀 더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리고 싶어할 것이다.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아 농업 외 경제활동도 가능하면 하고 싶을 것이다. 친환경농법이 조금 힘들더라도 가격과 판매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시도해보고 싶은 농부들도 있을 것이다.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올려서 직불제도 받고 의료혜택도 받고 싶을 것이다. 귀농한 청년 소농이라면 농업 외 경제활동을 하면서 농사짓는 일이 생명을 가꾸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소득은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시작한 청년 소농은 농지은행에서 겨우 그럭저럭한 농지를 구해서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가능하면 환경도 생각해서 농사를 지으며 비용과 소득을 산출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을 올리게 될까 계산할 것이다.

○ 기계농사를 지으며 농사로 사업을 하는 농부들: 규모화를 더 원할 수도 있고, 지금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이주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하우스를 몇 동 포기하고 농업 외 사업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규모와 단가 문제가 있어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것은 생각조차 안해볼 것이다. 그래도 가격과 출하만 보장해준다면 친환경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기계와 가족 노동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은 기존의 농사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친환경 농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다. 최근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듯 하지만 농사방식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서 코로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부모의 농지를 이어받아 귀농한 청년 농부들은 농업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한다. 부모님이 했던 농사방식을 뛰어넘는 스마트팜도 관심이 가고, 최첨단의 농사는 어쩐지 멋져보이기도 한다. 수경재배와 완전자동화된 재배가 친환경으로 느껴지고 매우 과학적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쪽을 지원하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농사로 먹고 사는 데 큰 문제는 없었으니 큰 문제만 안생기면 괜찮

을 뜻하다.

- 어느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소득 보전과 소득 창출이 농사짓는 삶에서 중요하다. 더 많은 소득을 지향하는 농부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까지 소득이 창출되는 한에서 농업 외 경제, 사회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부도 있다. 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는 농업이 비정규직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소득 창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는 물질적·심리적 불안정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다시 1위가 되었고, 자살율에서 농민들의 자살 비중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소득은 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농업체계를 지배해 온 속에서 소득과 성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 그러나 오늘부터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올해는 기후위기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이 우리에게도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민들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다. 기후위기에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농어업이고 농민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그러했다. 어느 국가는 대형마트가 텅빈 사태가 발생했고, 어느 국가는 농산물(특히 주곡)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어느 도시는 도시 내 먹거리 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다시 식량안보 또는 먹거리 주권과 자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먹거리 주권만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농사를 짓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정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농민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에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농민이 위기의 시대에 모두를 먹여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생명과 직결된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거나, 더욱 원하게 되어야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형 직불제, 농민공익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 토론의 쟁점이다.

2. 공익과 소득의 문제

- 헌법에서 공익: ‘공공복리’(제23조 2항, 제37조 2항), 이 개념은 가장 대표적으로 공익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됨. ‘공공필요’(제23조 3항)의 조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인 ‘주민의 복리’(제117조) 또한 공공복리에 해당됨. ‘환경보전’(제35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제122조), ‘국민경제의 발전’(제127조), ‘중도덕이나 사회윤리’(제21조 4항), ‘선량한 풍속’(제10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공익형 직불제, 농민공익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에서도 언급하는 ‘공익’이라는 게 무엇일까. 구체적인 형태와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 개념일까. 농식품산업기본법에서 언급하는 공익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익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이 가운데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농식품산업기본법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만으로는 공익 창출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공익 창출을 유도하려면 지금의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환경을 보존, 즉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생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산활동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함께 제시해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 정책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현재 이러한 기준과 지향을 갖지 않는 생산활동을 전환시킴으로써 공익형 직불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 농민공익수당에도 다음과 같은 목적과 ‘공익’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농어민수당지원법안(2020.9., 강은미의원 발의)
 -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 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법안(2020.6., 윤준병의원 발의)
 - 이 법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울력 등을 통해 농촌을 관리하는 농민들의 권리이다.

- 두 법안과 농민단체에서 규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보면, 법안은 안정적 소득 기반제공과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는 두 목적이 함께 들어있거나, 소득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읽혀진다. 법안 4조에서 책무를 제시함으로써 공익기능이 생태계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농민단체에서 추진해 온 농민수당에 대한 규정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고, 농민은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울력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제시한다.
- 두 법안이 공익적 활동을 책무를 통해 수행하도록 소득을 제공하는 의미라면 공익형 직불제와 매우 유사한 목적과 정책적 방법을 가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규정은 공익적 활동을 농식품기본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익적 활동은 오히려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행위 자체에 근거하고, 그 외 몇 가지 공익적 활동을 ‘권리’로 설명하여 이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공익형직불제 및 두 법안에서 명시하는 ‘공익’의 의미와 농민단체가 이끌어 온 농민수당정책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공익’은 조금 달라보인다. 후자는 고전적 혹은 초기적 형태의 생산활동 자체에만 공익의 의미를 강조하여 오늘날 위기적인 상황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공공의 이해인 기후위기나 팬데믹 문제 등에 무게를 두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생산활동만으로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논리는 현재적 관점에서 다수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조금 부족해보인다. 공익, 즉 공공의 이해는 정치적·법적 영역에서 다투는 기준이며, 농민수당이든 농민기본소득이든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방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은 시대적·사회적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변하는 것이다.
- 농민기본소득법안
 - 이 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 “사회적 기본권보장”이란 헌법 10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의 기본권을 말한다(제2조 6호).
- 농민기본소득법안에서 ‘공익’은 없다. 이 법안은 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을 근거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다. 농촌을 진단해보니 농민들이 기본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당해왔으니 이를 소득으로써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공익형직불제와는 그 근거는 다르지만,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목적으로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공익형직불제와 유사하다.

-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위기적 상황을 전환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까. 공익형직불제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그 대상을 농민권리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민을 포괄하려 한다는 점에서 ‘권리담지자’의 정체성이 강하다.
- 농촌에 가면 삼거리 점빵 아저씨도 농사짓고, 우체국 국장님도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귀촌한 독신 여성도 농사를 짓고, 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해도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훨씬 제한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농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주체를 기존의 농업인 또는 농촌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농민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3. 방향성

- 위기상황의 전환은 농업, 농촌, 농민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지구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 사회의 전환이 절실하며, 농촌과 농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과 농민의 전환은 사회 곳곳의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논하는 정책들은 그 전환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공익’의 의미가 가장 잘 부각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와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수당은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정책들은 중앙정책에서 추진된다면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정책으로써 공익형직불제와 농어민수당은 농가와 면적 중심에서 농민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익적 전환을 기반으로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추진하여 지급금액을 훨씬 높여,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소득 불안정을 완화시키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수의 농민들은 소농이지만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면서 소득이 보장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 이 다수의 농민들이 더 다수가 되는 농촌을 만드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촌에는 매우 다양한 농부들이 살아가고 있다. 나의 부모님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농부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시기에 농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여러 형태의 농부들이고, 이들은 더 다양해지고 많아져야 한다. 생명을 키우고 건강한 먹거리를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있기 때문이다.

이호중

이호중 상임이사
[사] 농어업정책포럼

국가·국민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그린뉴딜’과 농민기본소득

1. 국가·국민의 위기 (농어업·농어촌 분야)

①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악화

- 기후위기는 지구에 닥친 대재앙으로 전세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인류 생존 위협, 지구온도 상승 1.5°C로 저지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18)
 - 현추세 유지시 2100년 3°C 상승 : 해수면 1.1m상승, 지구생명체22%멸종, 식량 25%감소, 식량부족고통받는 인구(18억1,700만명)
- 농어업분야는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피해분야이며, 해결의 주요주체
 - 과거 농정으로 정립된 산업적 농식품체계(생산·가공·유통·소비 등)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 <출처>Poore & Nemesek(2018), OurWorldinData.org
 - *전세계 온실가스배출비중(18) : 비먹거리(74%), 먹거리(생산·가공·유통분야, 26%)
 - 또한 과거 생산주의 농정(생산성증대, 경쟁력제고 중심)으로 생태환경 악화
 - *화학비료 과다 사용(OECD평균대비 질소3.4배, 인7.7배), 고밀도 축산(OECD평균대비 가축밀도 3.1배) 및 양식 등으로 한국농어업의 환경부하 세계 최고 수준
 -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업 피해 심화 : 병충해·자연재해 피해증가, 작물생육장애·식량생산감소 및 품질저하·가축질병증가 및 생산성저하 등
 - 농어업·먹거리시스템 전환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개선가능
 - 농어촌은 화석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

② 식량안보·먹거리 불평등 등 국민 먹거리의 위기

이 글은 필자가 수행한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의 비전과 과제’ 최종보고서(대통령직속 농특위)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기후위기는 식량안보를 위협, 코로나19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 확인
 - *코로나19이후 (러시아)밀수출 제한, (필리핀)쌀비축 확대, (베트남)쌀 수출계약 일시 중단
- 쌀 이외 주요 곡물 대부분 수입의존, 안전성 논란 GMO수입 세계 상위권
 - *곡물자급률('18, 21.7%): 쌀 82.5, 밀 0.7(연 2,331천톤 수입), 콩 6.3(연 1,338천톤 수입)
- 식생활에 따른 건강비용*, 취약계층 먹거리 불평등** 등 사회문제 증가
 - *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15) 9조1,506억원 → ('16) 11조5,000억원
 -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 ('10) 10.0% → ('17) 13.1%

③ 농어촌소멸·도시과밀화 등 지역의 위기

- 초고령화, 과소화로 농어촌 소멸 위기 심화
 - *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의 39%(89개)가 소멸 위기(한국고용정보원, '18년)
 - * 농어촌1,413개 읍·면·중 84.2%가 초고령(고령인구 20%이상), 50%가 무출생 및 10인 이하 출생
 - * 지역소멸지수('18년) : (섬) 0.234, (어촌) 0.303, (농촌) 0.341, (도시) 1.208
- 도시과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교통, 환경, 주택 등) 발생, 코로나19 이후 과밀화된 도시의 문제 부각

④ 농수산물 가격불안과 도농소득격차·재해 등 농어민 안전망의 위기

-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도농소득격차·재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자급율 22% 불과함에도 채소류 중심 가격폭락 되풀이, 기후위기로 재해심화
- 도농간 소득격차 및 농어가내 양극화 지속
 - *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소득(19), 농가 62.3%, 어가 80%, 임가 55.1%
 - * 소득5분위 배율(18) : (전국) 5.23 (농가)11.1

2. 국가·국민의 위기 극복 위한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①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없이 기후·먹거리 위기 해결은 불가능

-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 산업적 농식품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중 하나이지만 환경친화적 농어업 및 먹거리체계로 전환하고,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주도적 역할 가능

② 기존 농정의 대전환 없이 농어업·농어촌은 지속 불가능

- 과거 농정(생산주의, 경쟁력주의 등)은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성의 위기 및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의 위기를 초래

③ 농어업·농어촌은 국가존립, 국민행복 실현의 필수요소

- 농어업·농어촌의 붕괴는 국민 행복실현을 위한 다원적기능(먹거리공급, 온실가스방지, 경관보전, 생태자원보호 등)의 상실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3. 농어업·농어촌 그린뉴딜과 농민기본소득

① 국가·국민 위기 극복 위한 대전환과 새로운 사회적합의(그린뉴딜)

-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등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은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 없이 추진 불가능
 - 또한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수반되는데,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적 동의가 중요
- 국가·국민 위기극복 위한 대전환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가능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정 대전환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뉴딜) 추진 필요
 - 농어민·주민과 국가·국민간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그린뉴딜

<그린뉴딜의 취지>

□ 생태환경 훼손형 산업과 인간 활동방식으로 초래된 위기(대재앙) 극복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 유행에 따른 대재앙, (기후위기)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 (불평등) 양극화 위기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 기후·감염병·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시스템 대전환

-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지속가능 경제체제 및 분배체계를 새롭게 구축 필요

② 농어민·농어촌주민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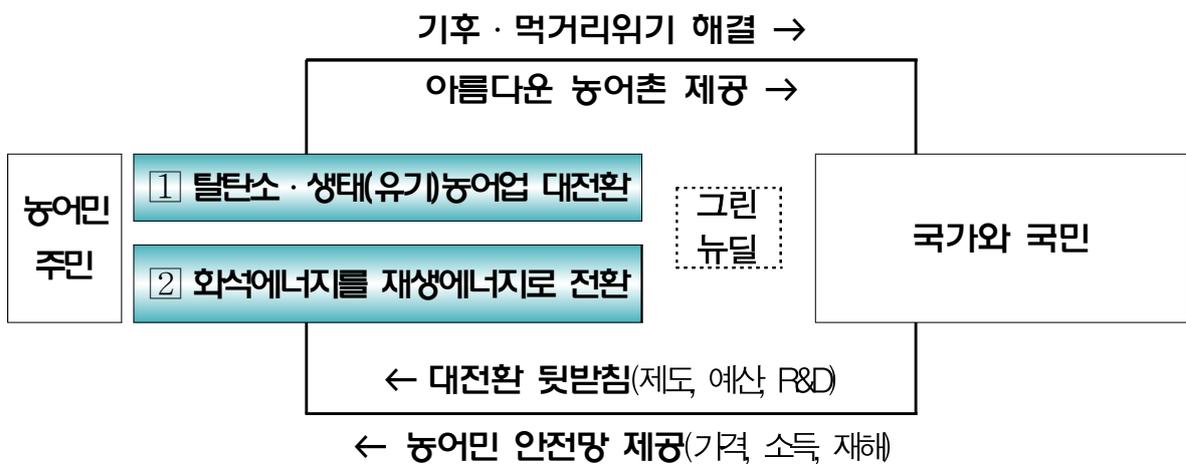
1)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으로 대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감축, 친환경농업비중 30%확대, 곡물자급률10%p↑

- 경축순환형축산 전환 및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 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 목재로 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 바다속 탄소흡수원 확충(바다숲·목장 조성) 및 지속가능어업관리체계(TAC)
- 2) 농어촌 자원 이용하여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 주민공동체 주도 이익공유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풍력
 - 농어업부산물(목재, 축분 등) 활용 바이오매스종합전략 마련 및 에너지자립 지역·마을확대

③ 국가·국민의 약속

- 1)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뒷받침(예산, 제도, 연구개발)
 - 공익형직불제 예산(1조원) 증액,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5% 유지
 - 탈탄소·생태(유기)농업 전환을 위한 농민실천활동에 직불금 지급
 - 관련 법 제·개정, 연구개발(R&D)
- 2)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안전망 제공(가격, 소득, 재해)
 -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체계구축
 - 농가소득안전망구축 : 수입(소득)보장보험도입, 기본소득 도입
 - 재해 국가보상체계강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부록 셋

오준호 정책비서관
용혜인 의원실

농민기본소득은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토론에 앞서

순순히 그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빛이 꺼져가고 있음에 격노하고 소리치세요

- 딜런 토마스(1914-1953)

농민들의 처지는 빛이 꺼져가는 어두운 밤으로 비유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고, 오랫동안 정부의 농정은 농민 삶의 보장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무한경쟁·승자독식 기조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어두운 밤으로 순순히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은 모순된 농업 현실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요, '제2의 동학운동'(박경철)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사회적 기본권'이든,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든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 토론문에서 필자가 제기하려는 논점은 '농민기본소득이 온 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온 국민 기본소득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인가'이다.

기본소득 도입의 경로

기본소득이란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동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앞의 세 가지 특징은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이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 요구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뜨겁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경로는 '완성형'과 '구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완성형은 기본소득제도를 그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로 한 번에 도입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시민 모두가(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까지)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바로 지급받는다. 이에 비해 구성형은 특정 인구 집단 별로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고 차차 제도 사이 틈을 메워 궁극적으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로 가는 것이다. 물론 구성형 경로를 택하면서도 적은 액수의 소득을 온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구성형 경로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건 기본소득 원칙 가운데 보편성을 조금 양보한다는 뜻이다. 전 국민이 아닌 특정 인구 집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집단 내에서는 자산 심사나 자격 심사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하면 무조건성 원칙은 지키게 된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과도기형 기본소득,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과도기형 기본소득은 연령을 범주로 정하는 것이 수월하다. 연령은 어떤 기준보다 지급대상이 분명하고 정책 집행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세 이하의 현재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금액을 높여 아동·청소년수당으로 발전시킨다. 65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금을 모든 노인에게 보다 넉넉한 급여를 동등하게 지급하는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 19세 이상 청년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점차 비청년-비노인 인구까지도 포괄해가면서 온 국민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이 온 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려면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개별 농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은 정당하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을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 이는 농민이라는 범주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농민이란 누구인가?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농민 대신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농업인의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많은 임차농·농업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여성농·고령농·청년농을 배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 지원정책이 개인이 아닌 농가 중심인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농민 기준을 제시한다. (1)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실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 (2)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70세 이상 지역민 (3)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업종사자 (4)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이주노동자. (박응두)

농민기본소득은 이전의 어떤 제도보다 폭넓게 농민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 범주에도 누군가는 제외될 수 있다. 가령 귀농한 지 1년이 안 되는 농민은 제외된다. 농민 범주에 속하더라도, 소일거리로서 농사와 소득원으로서의 농업에 애매하게 걸친 농촌 주민은 기본소득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정하기 쉽지 않다. 문턱이 아무리 낮아도 일단 자격 조건을 두면 생기는 문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 개념적 혼돈을 말끔히 정리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모든 정책은 실행 전에 크고 작은 개념적·실무적 문제들이 있고 이는 정책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우리의 목적은 제도의 이론적 완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로 가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여러 과도기형 기본소득제도들이 생길 수 있어, 정책 조정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장차 농촌기본소득과 농업(농사)참여소득으로 분화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물론, 농민기본소득 안에 두 개의 정책을 포괄·병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도농 구분이 모호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도시 주민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박응두). 하지만 농업참여소득이 보완적으로 도입되면 이런 사각지대는 메워진다. 농촌에 거주하지 않고 도시에 사는 ‘도시농부’도 농업참여소득의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포함한 농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부’의 권리가 있다는 점, 농업은 농민과 비농민의 호혜적 상호부조 속에서 지속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된다. 사실 산업으로서 ‘농업’만 필요하다면 굳이 농민이 아니라 영농 자동화와 기계화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농업은 물론 농민과 농촌공동체, 농촌의 자연환경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지향이 농민기본소득에도 내재해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농촌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농민기본소득이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려면

농민기본소득운동은 온 국민 기본소득운동의 마중물이 될까? 그럴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은 그 돈이 다른 사람들의 세금에서 온 거라고 이해하면서 자신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납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을 온 국민 기본소득의 지지자로 만들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 범주형 기본소득의 수혜자들이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를 실현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받는 지원부터 더 늘어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경우 범주의 문턱이 높아지고 선별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려면,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끊임없이 “온 국민 기본소득 없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지원은 커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두 혜택을 얻을 때 각 집단이 얻는 이익도 더 커진다.

그러므로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추진하면서 ‘공통부 기본소득’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공통부는 그 사회가 공통으로 가진 부를 말한다. 대표적 공통부 기본소득은 탄소세,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탄소기본소득, 토지기본소득이다. 탄소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토지세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자산불평등 해소는 농민과 농촌공동체에도 절실한 과제이다.

공통부 기본소득은 액수는 적더라도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된다. 공통부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함께 추진할 때 국민적 지지를 얻어 후자의 도입도 빨라질 것이다. 농민과 농촌 주민의 소득 보장 역시 훨씬 더 촘촘하고 두터워진다.

기본소득 운동은 실질적 자유와 공통부 권리를 위한 주권자의 운동이다. 운동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부분적 모호함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은 오류가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용혜인 의원실도 적극 동참하려 한다.

끝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과 도입 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숙의 토론하고 공론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정부와 반대 세력을 설득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 공론화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을 의제로 숙의 토론이 도농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벌어지면서 ‘질 높은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용혜인 의원실에서는 기본소득공론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넷

박종서 사무총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발행

2020.11.3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실

문의

Tel. 02-784-3063

e-Mail. hello@yonghyein.kr

주제발표

1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

2 농민기본소득 논의의 쟁점과 과제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박웅두 운영위원

토론

1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2 진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상임연구위원

3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4 오준호 용혜인 의원실 정책비서관
